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지난달 한국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트워크안전법>이 2017년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네트워크안전법>의 하부 규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국가표준, 지침 등 규정이 연이어 발표 및 시행되고 이에 기한 감독 관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동향과 그 중 일부 규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 시행

중국 공안부는 2019년 4월 10일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互联网个人信息安全保护指南)>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네트워크안전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실제 감독관리를 주관하는 공안부가 작성한 것인 만큼 공안부의 법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양도, 삭제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으로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안전규범>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욱 변호사

T 86.21.6085.2900
E sungwook.kim@bkl.co.kr

김 희 진 변호사

T 02.3404.7591
E heejin.kim@bkl.co.kr

양 민 석 변호사

T 02.3404.7556
E minseok.yang@bkl.co.kr

오 려 민 외국변호사(중국)

T 86.21.6085.2900
E lmwu@bkl.co.kr

〈개인정보안전규범〉과 비교하면, 1)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중국 공민(公民)의 종족, 민족, 정치사상, 종교신앙 등 민감 정보의 대규모 수집 금지, 이용자의 위법 내용 제출 방지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2) 개인정보의 보존과 관련하여 암호화 보존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3) 개인정보안전 관련 사건의 응급 대응과 관련하여 비상 대비 훈련의 주기를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4) 〈개인정보안전규범〉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본 지침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시행

중국 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2019년 8월 23일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을 발표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아동용 이용자 약정 마련, 전문인력 배치, 아동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취득, 최소 위임의 원칙 등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보존, 이용, 이전, 공개 등 활동에 적용됨. -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킴.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규칙과 이용자 약정서를 마련해야 함. -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동의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용, 이전, 공개 시 분명하게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취득해야 함. - 동의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최소위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정보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동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여야 함. - 직원이 아동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접근 상황을 기록해야 함.
제3자 위임/이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입자와 위임 행위 등에 대해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위임계약에 쌍방의 책임, 처리 사항, 기한, 성격과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함. - 제3자에게 아동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에 위임하여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3. 안전등급보호 기본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표준 개정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19년 5월 13일 〈정보안전기술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 기본요구(信息安全技术网络安全等级保护基本要求)〉라는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안전등급보호 업무의 '2.0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표준인 〈정보안전기술 정보시스템안전등급보호 기본요구(信息安全技术 信息系统安

全等级保护基本要求))가 개정되면서 명칭도 함께 변경된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 적용되고 있던 정보안전등급 보호에 대한 기본적 요구사항에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및 공업제어시스템 등 신기술 및 신 응용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4. App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활동 강화

중공 중앙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 부서,公安부서, 시장감독관리총국 4개 부서는 2019년 1월 25일 <App의 개인정보 위법수집 전문관리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开展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专项治理的公告)>를 발표하여 1년 동안 App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App상 개인정보 위법수집 행위 인정방법(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위법수집 인정방법")을 발표 및 시행하였습니다. 위법수집 인정방법은 App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는 하지만, 다른 온라인상 거래나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정방법은 총 6개 유형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유형과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행위 유형	주요 기준
수집·사용규칙의 미공개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cy Policy가 없는 경우 - App 최초 실행 시 팝업창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수집·사용 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작은 글씨 등으로 수집·사용 규칙을 읽기 어려운 경우 등
개인정보 수집·사용의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 - 변경에 관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개인민감정보 수집 동의 요청 시 그 목적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취득 전 수집, 동의 거절 후 수집 또는 이용 방해 - 범위 초과 수집, 묵시적 동의, 사기·기만에 의한 동의 취득 등
필요성 원칙을 위반하여 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한 개인정보 유형이 기능과 무관한 경우 - 수집 빈도가 필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불필요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또는 익명화 처리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 App을 제3자 응용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투서, 신고 방식 등 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정, 삭제, 계정 탈소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불필요,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이용자의 관련 요청을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안전 관련 투서, 신고 경로를 수립 또는 공고하지 않거나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제정 중인 규정

- 국가 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2019년 5월 28일 <데이터안전관리방법(의견수렴안)(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방법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수집, 처리, 사용 및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네트워크 운영자는 경영상 목적으로 중요 데이터 또는 개인 민감정보 수집 시 관할 정부부서에 등록해야 하고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제품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시 별도의 규칙을 제정 및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2019년 6월 13일 <개인정보 국외이전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방법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행위의 정의, 네트워크 운영자 및 개인정보 수집자의 직책, 개인정보 국외이전 안전평가 내용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네트워크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관할 정부 부서가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였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한국 본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위 규정의 내용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 정보안전표준화 기술위원회는 2019년 10월 22일 국가표준인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의견수렴안)(信息安全技术个人信息安全规范(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은 비록 법적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일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정부부서 및 기업 등에게 구체적인 방향,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업무 기능, 수권 동의 등 수락 강요 금지, 계정 말소에 대한 요구사항 보완 등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정보안전표준화 기술위원회는 2020년 1월 20일, 국가표준인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고지 및 동의 지침(의견수렴안)(信息安全技术个人信息告知同意指南(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처리 시 고지 내용, 구조와 개인정보 수집, 사용, 제3자 제공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득하는 방식에 관한 가이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지침, 정책 등이 활발히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관련 법제가 강화되고 점차 엄격화, 규범화,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되는 규정들은 중국의 여러 정부부서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제정한 것인데, 이들은 법적 강제력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중첩되거나 상이한 부분도 있어 아직까지는 실무상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 동향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법률의 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 및 변동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eoul Office: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T 02.3404.0000 F 02.3404.0001 E bkl@bkl.co.kr

Beijing Office:

Unit 2601, Ea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T 86.10.5879.3080 F 86.10.5879.3038 E beijing@bkl.co.kr

Hong Kong Office:

Room 205, 2F,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Hong Kong

T 852.2567.0800 F 852.2567.9500 E bklhongkong@bkl.co.kr

Shanghai Office:

Unit 2503, Tower B, Dawning Center No.500,
Hongbaoshi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1103, PRC

T 86.21.6085.2900 F 86.21.6085.2929 E shanghai@bkl.co.kr

Hanoi Office:

West Tower 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 84.24.3232.1233 F 84.24.3232.1235 E vietnam@bkl.co.kr

Ho Chi Minh City Office:

Unit 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28.38.212.303 F 84.28.38.21.24.27 E vietnam@bkl.co.kr

Yangon Office:

No. 82, Sin Phuy Shin Avenue, Pyay Road, 6 1/2 miles, Ward 11,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E myanmar@bkl.co.kr

Dubai Office:

Business Center #32, The Gate, Level 15, DIFC, P.O. Box 121208, Dubai, UAE

T 971.4.401.9921 F 971.4.401.9578 E dubai@bkl.co.kr